



( : )  
[ 2018.2.9. ] [ 491 , 2018.2.9., ]

( ) 044 - 201 - 3393

1 ( ) 「 」

2 ( • )  
( " " ) 「 」 ( " " ) 7 3  
• ( " " )

- 1.
- 2.

7 4 1  
( ) ( 2 3 )  
( )

3 ( ) 12 2 1  
( ) ( " • " )

- 1.
- 2.

12 5

1. 「 」 ( " " ) 10 5 1 가

가.

- 1) • •
- 2) • (耐荷力)
- 3) •

가

2. 10 5 2 가

가.

- 1) •
- 2) •
- 3)
- 4)
- 5)

- 1) • • •
- 2) • • •
- 3) (受變電),

1)

2) .

3) .

1) . .

2) . (耐荷力)

3) .  
가

4 ( ) ) . . . . ( ( ) ) 16 3

1. . ( 「 」 . )

2. 16

3. 「 」 2 4 . ( " . " )

5 ( ) ) 15 3 1 " "

1.

2.

3. , ,

4.

5.

6.

7.

8. 1 7

6 ( ) ) 27 4 " " 2

7 ( ) ) 31 1 ( " " ) ( 3 )

1.

2.

3.

4.

25 1 " " 4

8 ( 가 ) ) 35 2 5 가( 가 ) ) 5 .

35 2 2 " "

1. 가:  
가.

.  
. .  
. .

( ), .

2. 가:  
30 1 " 6

9 ( ) 47 1 ( " " )  
7 ( )

1. 45 4 가  
2.  
3. .  
4. .  
5.

10 ( 가 ) 50 1 ( 25 1 2  
가 가 가  
)가 가( 가 )

( 8 " " ( )  
50 1 " " )

1. 가:  
가. . , 25 1 2 가  
27

. 52  
. 57 3  
. 63

26 1 1 27 1 1 ( )  
2. 가:  
가. 1

. 50 7 1 가( .  
)

1. 가: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97

2.

.

가:

가. 1 가

.

.

3

11

(

.

.

.

.

)

68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3

1

.

.

.

74

1

(

가,

.

.

가)

(

.

.

.

.

.

)

(

1.

가:

가.

.

2.

.

가:

.

13

(

가

)

.

.

.

.

78

4

.

.

.

가

.

.

.

.

1.

2.

3.

4.

가

5.

가

가.

.

.

.

- 14 ( ) 82 1 " "
1. 「 」
  2. 「 」 가
  3. 「 」 2 1 2 , 「 」 , 「 」
  4. 「 」 가 「 」
- 15 ( 가 ) 74 1 가 가
- 10 가 ( ) ( )
1. ( 3 9 )
  - 2.
  3. 14 5 ( 17 4 )
  - 74 2 " 가 " 11 가 가
  - 75 2 " " 12 가 가
- 16 ( ) 94 2 . ,
- 95
- 1.
  - 2.
  - 3.
  4. 가
  - 5.
  6. 95 .가 . ( " " )
- 가
- 50 7 가 가
- 1 2
- 3 3 가
- 3 1 , 83 3 4
- 17 ( ) 94 2 . . . . .
- ( . , . . . . ) ,
- 3 31 , . 1
- 2
- 3 31 9 30 .
- 18 ( ) 82 1 ( )
- ( ) 13 ( )

- 1. ( ) .
- 2.
- 3.
- 4. ( 4 2 가 )  
 1 ( . 「 」 36 1 「 」 88 )  
 . 1 가 81 1 4  
 14  
 15 ( ) .
- 19 ( ) 82 3 1 1 , . ,
- 20 ( . ) 「 」 ( " )  
 " ) 108 2 96 2 .
- 1.
- 2. 102
- 3.
- 4.
- 5. ,
- 6.
- 7. 106 1 , 113  
 1 가  
 ,  
 . 108 2 96 2 .
- 1.
- 2.
- 3.
- 21 ( ) . 111 1 ,  
 가, 가, 가 가 15  
 ( ) .  
 111 2 , . , . 15 ( )  
 ) ( )  
 , . , . 111 2  
 3 .

111 2

16

22 ( ) 124 6  
( )

< 491 ,2018.2.9.>

1 ( ) 2018 2 9

2 ( ) 183

가

가

「

」( 427 )

47 1

506

(

)

「

」(

24007

) 11

「

」(

1

)

45

3 ( ) 가 가

5 1 8 "「

」

7

8

4

가" "「

」 24 26

·

"

16 3

3. 「

」

4 2 가 2) "

"

"

"

"

6 "「

」

54

2

"

"「

」 69

1

"

1

5

"

"

"

"

29 1

"

"

"

"

4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안전진단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추진위원회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 존 건 축 물	대 지 위 치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착 공 일		준 공 일			
	설 계 자		시 공 자			
	대 지 면 적		m <sup>2</sup>	건 축 면 적	m <sup>2</sup>	
	연 면 적		m <sup>2</sup>	용 적 륜	%	
	동 수		세 대 수			
	구 조 방 식		난 방 방 식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m <sup>2</sup> )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신 청 사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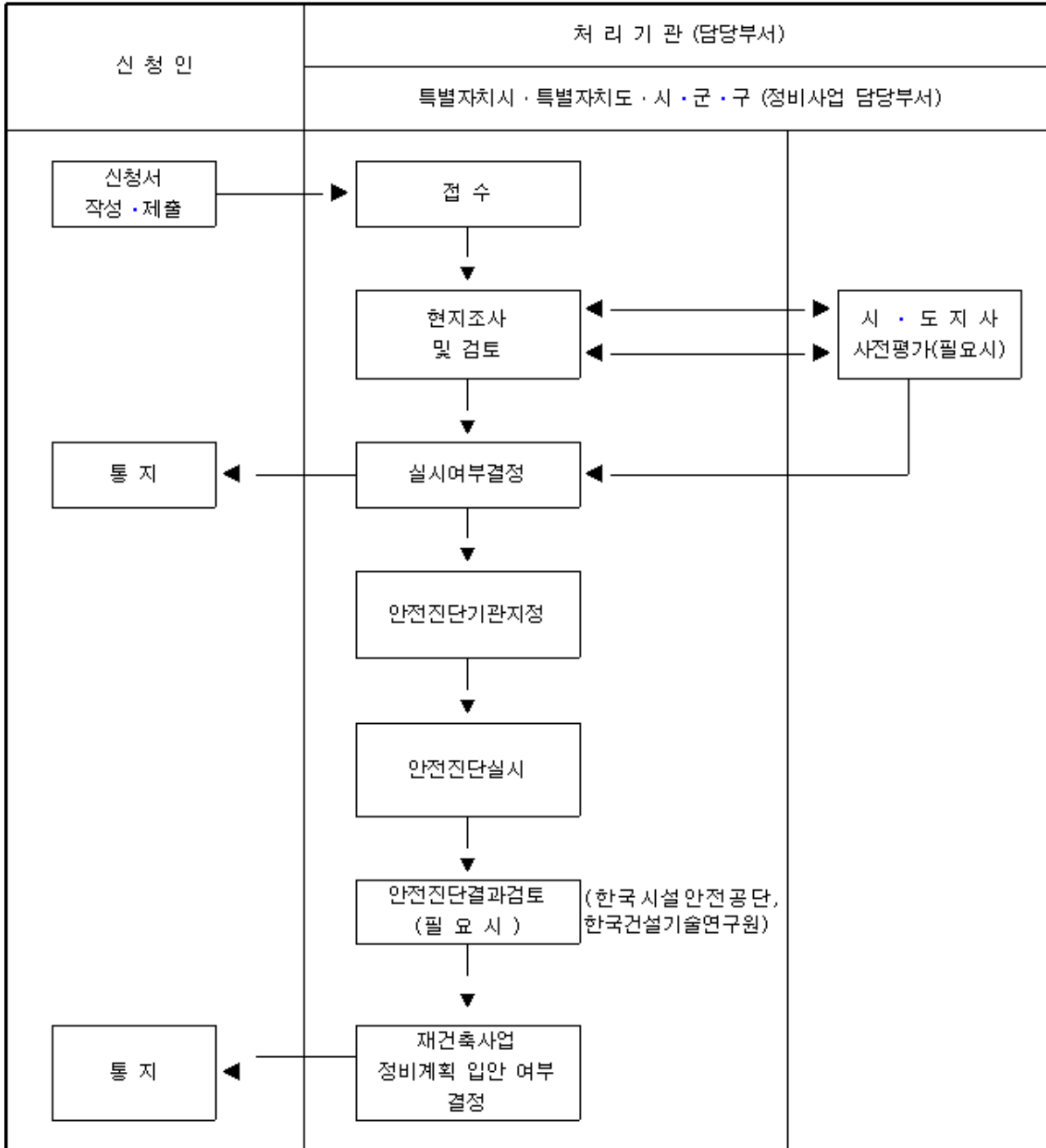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 I. 동의자 현황

(앞 쪽)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 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m <sup>2</sup> )
		( )		
		( )		
	건 축 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 II. 동의 내용

#### 1. 신탁업자 현황

명 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 2.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	비 고
	m <sup>2</sup>		m <sup>2</sup>		
나. 공사비 등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	신축비	신탁보수	그 밖의 비용	합 계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 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		연 번	/
-----------------	--	-----	---

I. 소유자 인적사항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위치(주소)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m<sup>2</sup>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m<sup>2</sup>

※ 재개발사업의 경우

소유권  
현 황

소유권 현 황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 (공유여부)	면적(m <sup>2</sup> )	
			(계 필지)		
			( )		
			( )		
	건축물	소재지 (허가유무)		등 수	
		( )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 토지		지상권의 내용	

II. 동의사항

1. 추진위원회 명칭					
2. 추진위원회 구성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원장				
	감 사				
	부위원장				
	추진위원				

※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p>3. 추진위원회 업무</p>	<p>(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필요시) (2)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4) 조합정관 초안 작성 (5)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받기 (6)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p>
<p>4. 운영규정</p>	<p>※ 별첨</p>

III. 동의내용

가.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받았습니다.

- (1) 본 동의서의 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 (2)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과 반대의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

나. 본인은 II. 동의 사항(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000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추진위원회가 II. 동의 사항 중 3. 추진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p>신청인 제출서류</p>	<p>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p>	<p>수수료 없음</p>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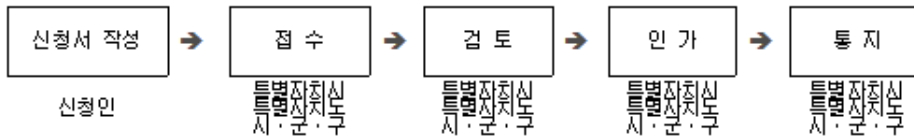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p>1.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조합정관</p> <p>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p> <p>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p> <p>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p> <p>마.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p> <p>바.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p> <p>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p> <p>아.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p> <p>2.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조합설립 동의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범위		연 번	/
--------------------	--	-----	---

1.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황 ※ 재개발사업인 경우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m <sup>2</sup> )	
		( )			
		( )			
		( )			
	건 축 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 ※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주소)	(단독주택) (아파트·연립주택) (상가)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m <sup>2</sup>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m <sup>2</sup> )		

210mm ×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급지(80g/㎡)]

(3쪽 중 제2쪽)

II.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m <sup>2</sup>	건축 연면적  m <sup>2</sup>	규 모	비 고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비용	합 계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text{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text{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text{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times \text{비례율}^*)$ $+ \text{비례율} = (\text{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text{총사업비}) / \text{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격}$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 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예시)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합니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합니다.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합니다.			

2. 조합장 선정동의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조합정관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합니다.

4.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와 같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합니다.

※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재개발사업  
(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주민대표회의 구성내역	주민대표회의 명칭			
	위원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정비사업 종류		위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구역	구역 명칭		
위치				
동의 사항	토지등 소유자 수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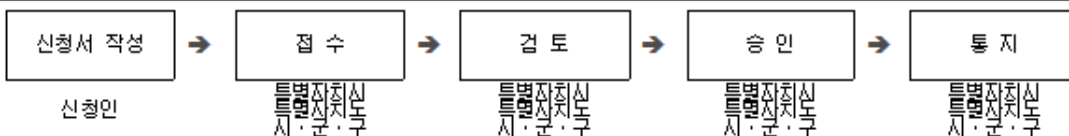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 명부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행 구역	구역명칭				시행면적		m <sup>2</sup>
	위 치				건축물		동 등 (무허가 동 등)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 (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목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동의 내역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수		건축물 소유자수		
	대상면적	m <sup>2</sup>	대상 소유자수	인	대상 소유자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동의자수 (동의율)	( %)	동의자수 (동의율)	(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시행 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		사업비		원	
	부지 명칭	대지면적		m <sup>2</sup>	주용도		
	건축면적	m <sup>2</sup>	건축연면적	m <sup>2</sup>	지하면적		m <sup>2</sup>
	건 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m <sup>2</sup>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종질지(80g/m<sup>2</sup>)]

(3쪽 중 제2쪽)

사업 시행 계획	주택	공급 구분	주택 형태	동수	세대 수	주택규모별 세대 수 (전용면적기준)				
		계								
		분양								
		임대								
	정비 기반 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건축물	철거	이전	공작물	철거	이전			
			동	동		개소	개소			
개수대상 건축물		동	임시거주계획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필지수		면적		권리자수				
				m <sup>2</sup>						
	건축물	동수		연면적		권리자수				
				m <sup>2</sup>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 주택 공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대				
일괄 처리 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사방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 )					
	농지전용신고 ( )		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 (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입목벌채등의허가·신고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3쪽 중 제3쪽)

일괄 처리 사항	하천점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 )	공유지대부·사용허가 ( )	사업 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공장설립승인·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신고(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소방동의·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대기·수질·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신고(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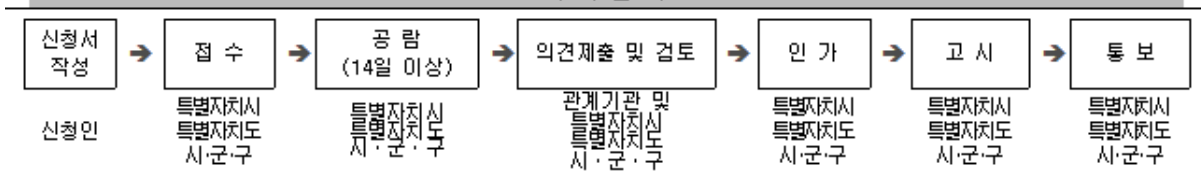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중지·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획대상	사업의 명칭				
	위치				
	계획면적	m <sup>2</sup>	정비건축물	동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시행기간		

토지소유권변환	총면적	시행전	사유토지			국공유지			그 밖의 토지		
	m <sup>2</sup> (필지)	시행후	환지 대상			시행자 보유				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	그 밖의 토지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존치 국공유지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국공유지 매각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건축시설	소계				소계	
	시행전 (m <sup>2</sup> )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시행전 건축물	허가 건축물		동		무허가 건축물	동(새로 발생 동)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비고	
시행 후 건축물	주택	소계						
		분양						
		임대						
	상가							
공급 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 수				상가 면적 (㎡)	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	
		계	㎡	㎡	㎡		㎡	
	계							
	토지등소유자							
	보류시설							
	일반분양							
	임대							

분양 신청 및 권리 신고	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1인의 분양 대상자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계			
	신청인 수					건 (인)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 인)	권리자별	대상	분양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그 밖의 처분
			소계	주택	상가	그 밖의 용도				
	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소유권외의 권리	대 상	건	이전 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세 입 자 대 책	대 상	임대 주택 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비대상				
공공시설	신 설				용 도 폐 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 전			시행 후						
	계	토 지	건 축 물	계	토 지	건 축 물				
자금운용	총 소요 사업비			수입 추산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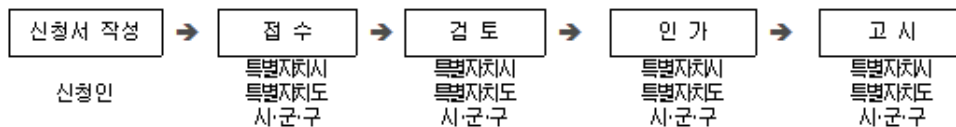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2.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준공인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가번호(연-월-일)					
사업 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설계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시공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사 감리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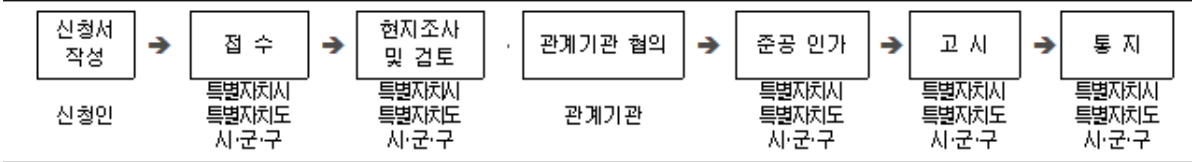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준 공 인 가 증**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재건축사업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세대수								
	주요구조								
	층수	지상 ( )층 / 지하 ( )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인가번호(년-월-일)			
사업 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설계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시공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사 감리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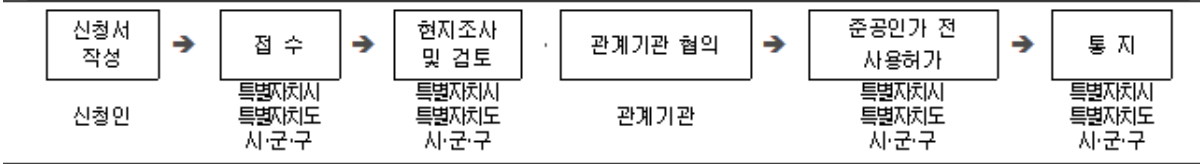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종질지(80g/m<sup>2</sup>)]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 칭		법인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기술인력	성 명	생년월일	분야 및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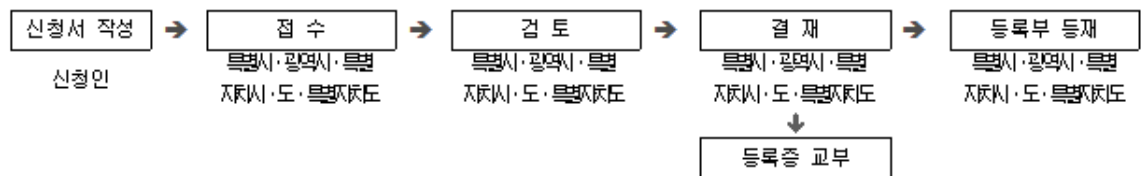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등록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이 서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일자	③ 대표자 명	④ 상호명	⑤ 영업소 소재지	⑥ 자본금	⑦ 기술자 성명	⑧ 사무실 주소	⑨ 비고 (전화)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 상 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등록연월일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b>조사공무원증표</b>	
소속:	사진 (3.5cm×4.5cm)
직위:	
성명: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위 사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제2항·제111조제2항 및 제113조제2항에 따라 조사·감독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교통부장관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80mm×100mm[백상지(150g/㎡)]</p>	